

인천지방법원 2021. 10. 7 선고 2021가단425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9. 16.

판 결 선 고 2021. 10. 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4. 5. 12. 접수 제59241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B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나. 피고 C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태환